

#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6.

발의자 : 강훈식 · 이원욱 · 안호영  
백혜련 · 김영진 · 김경협  
김상희 · 임종성 · 김진표  
이수혁 · 윤관석 · 이학재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유·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철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개량 및 현대화 등으로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역사 부지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으나 개발·운영 등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).

##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의 제목 “(철도시설의 점용허가)”를 “(점용허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철도시설에”를 “철도국유재산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